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 범위 조정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84호)

2025. 9.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부남 · 장종태 · 조계원 · 신정훈 · 민형배 · 채현일
전진숙 · 김현정 · 이성윤 · 이상식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7.
3. 회부연월일 : 2025.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가 가능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할 수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에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로 변경하는 한편,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정치관여죄로 처벌¹⁾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 ①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1.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u>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u> 안보침해행위에 관	라. ----- ----- ---- <u>연계된</u> ----- -----

1)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	개정안
한 정보 마. (생략)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정치 참여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u>제5호</u>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u>제6호</u>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 ⑥ (생략)	마.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치 참여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u> 7. ----- ----- ----- -----<u>제6호</u>----- ---- 8. ----- -----<u>제7호</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국가정보원은 현행법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로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는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당시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정된 것이었음.

전부개정 당시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보수집 활동 시작 단계부터 북한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할 경우 정보활동이 제약되거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심증이 있을 때에는 정보수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였음.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비교 >

종 전	현 행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

중 전	현 행
	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u>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u>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 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	<삭 제>

종 전	현 행
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u><신 설></u> <u><신 설></u>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u><삭 제></u>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 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

중 전	현 행
② (생 략)	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② ~ ④ (생 략)

개정안은 반국가단체와의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등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반국가단체와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개정안과 같이 정보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다음의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²⁾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검증·작성·배포 활동은 근본적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확인’된 안보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법익이 이미 침해받고 있는 단계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정보활동의 본질적 성

2)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5.

격에 부합하지 않음.

둘째,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사안 관련 첩보의 신빙성을 검증하여 행정·사법절차 지원 또는 확인·견제·차단 목적으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연계가 확인된’ 명백한 사실만을 정보활동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

셋째, 의심 단계에서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첩보 수집·검증과 확인·견제 등의 대응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안보침해행위 추적 활동이 위축될 것이 자명하며, 반국가단체 연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임.

관련 입법례를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47조³⁾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퇴거 대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 15. (생략)
- ②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 ⑦ (생략)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 제11조제2항제6호는 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활동 범위 조정 개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이 현행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⁵⁾는 모두 특정 정당·정치인·정치단체 등과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존 규정과의 균형성 등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되며,

5)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 각 호는 같은 법 제21조 정치 관여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반국가단체와 연계성이 없는 사안에 대한 정보활동을 정치 관여죄의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은 범죄와 형벌(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간 균형이 유지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⁶⁾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 6788-5614

6)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